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85
----------	------

2019년 11월 1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10.16. 김호평 의원 외 25명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.10.22.

다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19년 11월 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 애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황임에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여전히 미비된 실정이며,
- 특히,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, 청년 창업, 청년 복지, 청년 주거,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업무가 각 실·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.
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.
- 따라서,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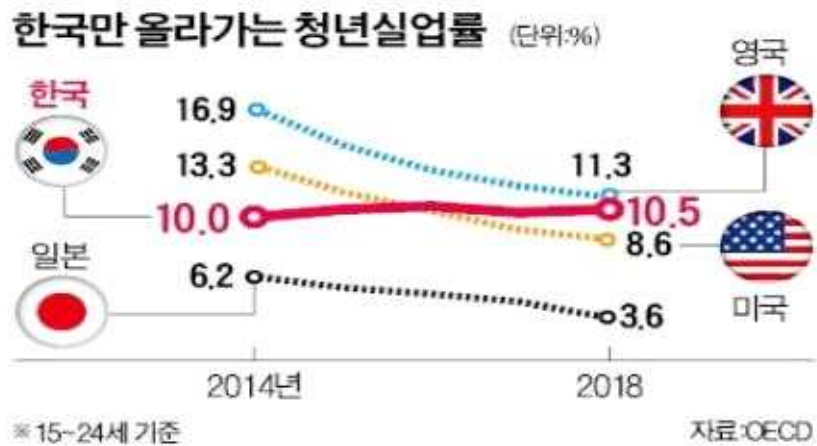
###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

- 이번 「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<sup>1)</sup>은 일자리, 복지,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청년문제가 지속되고 있어, 의회 차원에서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
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<sup>2)</sup>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% 진입 후 최근까지 10%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임.

<그림-1>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(2014년~2018년)

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8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.  
2) OECD 주요국가 청년실업률, OECD 통계.

-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, 2014년 15.1%에서 2018년에는 11.0%로 낮아졌으며, 같은 기간 미국(13.3%→8.6%)과 일본(6.2%→3.6%), 영국(16.9%→11.3%)의 실업률은 감소한데 반해,
  -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10.5%로, 2014년(10.0%) 대비 0.5%포인트 상승하는 등, 주요국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통계청의 국내 연령별 실업률 추이('13~'19.7.)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'19년 7월 기준 주된 구직 연령인 15~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(4.1%)의 2배가 넘는 9.8%에 달하며, 30~34세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4.6% 수준으로 나타남.<sup>3)</sup>

<표-1> 연령별 실업률 추이

(단위: %)

연령별	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.7
전체	15~64세	3.2	3.6	3.7	3.8	3.8	3.9	4.1
	15~29세	8.0	9.0	9.1	9.8	9.8	9.5	9.8
청년	30~34세	3.7	3.5	3.3	3.8	4.1	4.4	4.6

자료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

-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('15년) 이후 20%대를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, 특히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.8%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.<sup>4)</sup>
- 청년층은 계층적으로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며,

3)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4)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.9%, 2016년 22.1%, 2017년 22.7%, 2018년 22.8% 임. 통계청, 2018년 「청년체감실업률」.

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예비 주역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인적 자원이라고 할 것임.

-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, 신용 악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,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 빈곤, 부채, 결혼기피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.
- 이에 서울수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<sup>5)</sup>, 주거 빈곤<sup>6)</sup>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,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.
- 최근 서울시는 조직 확대·개편을 통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, 청년이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하는 청년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신설(2019.1.1.)한 바 있음.
- 하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가 서울시 각 실국(청년청, 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주택건축본부, 노동민생정책관 등)에 분산되어 있어,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와 같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-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통합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8대~제9대에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, 제10대에는 청년특별위원회('18.9.14~ '19.9.13.)를 구성해 활동한 바 있음.

---

5)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실업률 4.8%,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0.1%, '2019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', 청년청.

6)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의 단독, 다가구 및 고시원 등의 주거비율은 67.1%, 위의 자료.

- 이상을 종합하면, 청년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
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제2항7)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, 관련 상임위원회(행정자치위원회, 기획경제위원회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는 별도 의견이 없음.

---

7) 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의원 13명,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)

9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0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호평, 이성배, 임종국,  
송도호, 김제리, 고병국,  
오현정, 노승재, 문장길,  
김태호, 김경영, 홍성룡,  
박순규, 최 선, 송아량,  
한기영, 이준형, 이동현,  
정진술, 문병훈, 이경선,  
송정빈, 이상훈, 김재형,  
서윤기, 오한아 의원 (26명)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“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



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여전히 미비된 실정이며,
- 특히,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, 청년 창업, 청년 복지, 청년 주거,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업무가 각 실·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 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.
- 따라서,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 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-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미비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」 등의 청년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
  -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.
- 또한,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.
- 따라서,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19. 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